40. 市界外地域給水同意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4時 54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市界外地域給水同意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水資源管理委員會 高紀孝議員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高紀孝議員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高紀孝議員입니다.

존경하는 文一權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市界外地域給水同意案에 대하여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市界外地域給水同意案의 상정배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特別市水道條例 제3조는 서울시가 생산한 수돗물을 서울시계외 구역에 공급할 때에는 서울市議會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시계외 급수구역은 구리시와 남양주시로서 서울시가 총 생산비 3,423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완공할 계획인 강북정수장이 제1단계로 50만톤을 금년 5월에 통수하게 되고, 동 정수장 건립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얽힌 이들 지역에 급수를 약속한 1990년 12월 30일 수도권행정협의회의 합의에 따라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市界外地域給水同意案의 주요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수지역 및 1일 공급량은 남양주시에 6만톤, 구리시에 3만톤으로 합계 9만톤이며, 공급방법은 시설물 설치·유지 관리는 시계외 급수에 의한 계량기 설치까지 시설은 서울시가 설치·유지 관리하고, 해당 시별로 유량계를 각 1개소씩 설치하여 계량·공급하기로 하며, 수돗물 공급단가는 韓國水資源公社의 광역상수도정수공급단가를 적용하되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 시와 정수공급협약에 의해 체결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에서 위 2구역에 공급하는 수돗물단가를 韓國水資源公社의 광역상수도정수공급단가보다는 다소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위 2개 시 지역은 이미 韓國水資源公社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으며, 또한 향후 정수관련 시설의 설치·유지 관리에 이들 지역의 협조가 요구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도 동일한 단가적용이 불가피함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본 급수동의안은 서울시민에게 원활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호협조가 필요한 인근 이해관계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주요사안임을 감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그러면 市界外地域給水同意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시계외지역급수동의(안)

의안 번호	1125

제출년월일 : 1998. 3. 30.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강북정수장 통수('98.5월 예정)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인접한 남양주시와 구리시에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조(급수구역) 규정에 의거 시계외 급수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시계외 급수지역 및 공급량
   ○ 2개시에 1일 90,000톤 공급
   －남양주시 : 60,000톤/일
   －구 리 시 : 30,000톤/일
3. 공급 방법
   ○ 해당 시별로 유량계 1개소를 설치하여 일괄 공급
4.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 강북정수장 건설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시설한 시설물(도수관·정수장·송수관 등)과 시계외 급수를 위하여 시설한 관로

및 유량계실(유량계 포함)까지의 시설은 서울시에서 유지관리하고,

○ 시계외 급수를 위한 유량계실 이후의 상수도 시설물은 해당시 부담으로 설치 및 유지관리함.

5. 공급량의 계량 및 정수공급 단가

○ 공급량의 계량은 유량계에 의하여 시행하며,

○ 정수공급 단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정수공급단가"로 함.

6. 정수공급 협약등

○ 위 동의내용과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시와 "정수공급협약"을 체결하여 추진코자 함.

---

41. 뚝섬돔球場敷地賣却土地還收措置勸告決議案
(財務經濟委員會 委員長 提案)

(14時 59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뚝섬돔球場敷地賣却土地還收措置勸告決議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뚝섬돔球場敷地賣却土地還收措置勸告決議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 照)

뚝섬돔구장부지매각토지환수조치권고결의안

의안 번호	1173

제출년월일 : 1998. 4. 6.
제안자 :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

1. 주문

○ 서울특별시장은 뚝섬 돔구장부지 매각토지를 즉시 환수조치하여 본 토지를 포함한 뚝섬지구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토지 활용방안을 수립할 것.

○ 본 토지의 매각과 환수의 근본적인 책임은 월드컵유치위원회와 월드컵조직위원회의 일관성 없는 업무추진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환수에 따른 금전적인 피해는 월드컵조직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한다.

2. 제안이유

○ '92년부터 구상된 뚝섬지구 개발계획의 용역이 진행중이던 '95년 5월 월드컵 유치위원회가 월드컵축구경기 유치를 위해 뚝섬 돔구장을 월드컵 유치 신청서에 월드컵 경기장으로 포함시키겠다고 서울특별시에 요청하였고, 서울특별시는 돔구장 건설구상을 '95년 6월 월드컵 유치위원회에 통보하였음.

○ 월드컵 유치위원회에서는 돔구장이 포함된 월드컵대회 유치신청서를 FIFA에 제출하였으며, '95년 10월 FIFA 조사단의 현지 실사시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서울특별시에 송부하였음.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월드컵대회 유치가 국가적인 사업임을 감안하여 '95년 10월 시민공청회를 거쳐 돔구장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96년 10월 30일 제9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96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의결하여 '96년 12월 돔구장 건설사업자 모집공고 및 선정을 거쳐 '97년 3월 뚝섬 돔구장 토지를 공개 매각하였으며, '97년 11월 도시계획사업(운동장)실시 계획을 인가하여 현재 (주)LG돔이 건설을 진행중에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는 '97년 9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뚝섬지구 돔구장 부지매각과정 및 매각관련 사항을 조사하여 위치변경과 용도변경, 매각가격결정, 부지면적 등의 특혜의혹을 제기한 바 있음.

○ 한편,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조직위원회는 '97년 8월 28일과 '98년 3월 12일 2차례에 걸쳐 뚝섬 돔구장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경기장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서울특별시에 통보하였음.

○ 위 내용으로 보아 뚝섬 돔구장은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 개최가 불가하므로 서울특별시는 뚝섬 돔구장 부지 매각계약을 즉각 무효화하고 환수조치하기 바람.